

2018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일 시 : 2018. 4. 19.(목) 14:00~16:30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302호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김재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장애인 단체 등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2년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의사소통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2014년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과, 2017년에는 관광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장애분야에서 여러가지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시·도 단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8년 3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확정하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장애인연금 인상 등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권리신장 및 복지지원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듯,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는 올해는 제도약을 위한 성찰과 준비가 필요한 중



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장애인 인권현안에 대한 지역의 고민과 담론을 담아내는 이야기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지역의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김재석**



## 토론회 일정 및 순서

- 일 시 : 2018. 4. 19.(목) 14:00~16:3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302호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시 간	내 용
14:00~14:05	❖ 개회선언
14:05~14:10	❖ 개회사 -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14:10~14:15	❖ 환영사 -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14:15~14:20	❖ 축 사 - 이성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14:20~14:25	❖ 축 사 - 김종대 창원시의회 부의장
(장내정리 5분)	좌 장
14:30~14:55 (25분)	[기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의 평가 및 개정 방향 -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5~15:15 (20분)	[발 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 김범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15:15~15:30 (15분)	[현안토론 1]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15:30~15:45 (15분)	[현안토론 2] 신설 관광분야 차별금지규정의 이행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5:45~16:00 (15분)	[현안토론 3] 지역 장애인권리보호체계 구축 - 은종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6:00~16:25 (25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25~16:30 (5분)	폐 회

※ 수화통역, 속기자막, 점자자료 제공 예정



- [기조발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회고와 전망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 [발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김범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17
- [현안토론 1]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 83
- [현안토론 2]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95
- [현안토론 3]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은종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107
-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11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기조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회고와 전망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회고와 전망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는 말

최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sup>1)</sup>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즐기치게 장애계가 주장해온 헌법개정안<sup>2)</sup>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지난 11년 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된 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쟁점, 즉 헌법에 장애차별금지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것 같다.

제정 11주년,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 우린 비로소 장차법을 법률이 아닌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법률적’인 관점에서 장차법을 바라보았을 때와 사뭇 다른 풍경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제 더 이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에 의지하여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당당히 헌법상의 권리로 장애차별금지를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이는 물론 국제적인 시

- 1) 헌법 개정안 전문 참조(<https://www1.president.go.kr/Amendment>)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인 헌법 개정안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장애인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은 물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네트워크’에서도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 그리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에 대하여 ‘장애인관련독자조항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조현수, ‘헌법과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장애인권리보장개헌의 방향과 내용’,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 자료집, 9~16면 참조.
- 3) 「장애인권리협약」에 우리나라는 2007. 3. 30. 서명하고 2008. 12. 12. UN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2009. 1. 10.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해설집」, (2007) 참조. 그리고 2010년대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촉구하는 취지의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권건보,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이행상황검토’, 법학논고 제39집(2012. 6.), 517-542면 참조.

각에서 장차법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지는 것이 아니라 어엿이 우리 헌법으로 장차법을 바라보고, 다른 법률들을 장차법과의 충돌이 아닌 헌법위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장차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지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그려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꼼꼼이 되짚어 봐야할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헤쳐 나온 혹독한 현실의 벽을 다시 바라보면서, 어느덧 우리 자신도 모르게 훌쩍 커버려 그 벽을 조금이나마 뛰어넘을 수 있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미래는 우리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게 해줄 것이다.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 우리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엿한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의도는 장차법 제정 당시 또는 시행이후의 여러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존 여러 논의들과 중복되지 않게, 조금은 다른 시각을 취해보려고 하는 바,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장애인계가 이루어 놓은 이러한 성숙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필자의 바람이 조금이나마 드러난 것이니 다소 생소해 보이는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도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

## II. 장차법의 지난 10년간의 회고

### 1. 장차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07. 3. 6. 오후, 그 동안 그토록 범장애인계가 한 목소리로 염원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up>4)</sup> 그로부터 1년 후인 2008. 4. 11부터 장차법은 시행되었고, 여러 굴곡을 거치면서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장

4) 2002년 들어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각기 장차법 안을 선보였고, 이후 한국장총 등 장애인단체가 결집, 장차법 제정 추진 연대(이하 장추련)가 2003년 출범했다. 장추련은 법제정위원회, 투쟁위원회라는 두 개의 축으로 장차법 제정운동을 시작하여 장차법 제정을 이끌었다. 당시 통과된 법률안은 장추련이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기초로 열린우리당 안이 만들어진 후(대표 발의 : 장향숙), 위 법안에 민주노동당 안(장추련이 제안한 것임, 대표발의 : 노회찬)과 한나라당 안(대표발의 : 정화원)을 일부 반영한 보건복지위 대안이었다. 제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종운, ‘장애인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엮음 (2010)

차법제정의 의의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sup>5)</sup>, 그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종래 ‘시혜’(施惠)에 머물렀던 장애인 문제를 ‘권리’(權利)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중요한 시각의 변화이외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각이 있다면 ‘복지에서 인권으로’라는 새로운 관점의 발견이다.<sup>6)</sup> 같은 듯 다른 이러한 관점이 장차법제정 초기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복지적 접근’에서 ‘인권적 접근’으로의 장애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sup>7)</sup>,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등의 개념의 등장과 더불어 이전 소극적, 방어적 복지정책에서 그 후 적극적, 능동적 인권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하지만 장차법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일정한 당사자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기도 한 점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세 부분을 언급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개념의 불명확성이다. 제정초기부터 ‘의료적 모델’을 극복하고 ‘사회적 모델’을 도입하지는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구제절차에서의 각 기관의 협력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갖지 못했고, 인권위나 법무부, 법원은 장차법의 실효적인 집

- 
- 5) 박중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개정사항’, 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장차법개정 안수렴토론회자료집, 15-63면 참조. 위 글에서는 장차법제정의 의의에 대하여 ①당사자주의, ②연대주의, ③시혜에서 인권으로, ④장애인인권운동의 토대마련, ⑤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법률적으로 제시, ⑥장애인이권관련국제협약의 이행관련기준 제공, ⑦차별금지법제정의 선구적인 역할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끝으로 법제정절차의 방식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들고 있다.
  - 6)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국민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나, 장애인정책은 그 당시만 해도 여전히 공적영역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하여는, 조성은, ‘장애인정책의 사회적구성-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49권 4호(2011), 257면 참조.
  - 7) 장애인의 탈시설권리에 대하여는, 김명연,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민주법학 45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3), 149-178면 참조. 위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는 현행법률에는 규정된바 없으나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권, 평등권, 인간답게 살 권리등에서 도출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탈시설운동’은 장애인운동의 두 축으로 부리고 있다. 이에 2017년에는 인권위가 외부용역으로 ‘장애인탈시설방안마련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보고서로 제출케 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방안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2017. 11)
  - 8) 전지혜, ‘장애정책에서의 인권접근과 복지접근의 긴장과 공존의 관계에 관한 연구-탈시설화를 둘러싼 현상을 중심으로’, 2014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자료집, 13면; 조성은, 위의 글, 247-278면 참조.

행과 시행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지 못할 기관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셋째, 구제의 내용 또한 명목상의 조치에 취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sup>9)</sup>

## 2. 장차법 시행의 성과와 한계

하지만 비록 다소 불완전하지만 장애인인권의 보루로서 장차법이 시행되자 그 동안 억눌려 있던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전면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장차법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한 사례들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가에 큰 기폭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장차법의 수범자들의 자발적인 법준수(voluntary compliance)의지가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고 예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나아가 제정시 다소 우려했던 인권위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장애인차별행위에 대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up>10)</sup> 인권위에 제기되는 진정중 상당수가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이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듯 열정적으로 진정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차법이 가져다준 긍정적 변화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에까지 미쳐 2011년 방화사건의 가해자로 재판받게 된 여성지적장애인을 지원하며 장차법에 근거가 있었던 의사소통조력제도가 경찰조사단계에 서부터 활용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sup>11)</sup>

하지만 시행 후 수년이 지나면서 법 시행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sup>12)</sup>

- 
- 9) 그 외에도 차별에 대한 사회감수성제고, 차별시정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수립,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협력요구등이 제정당시부터 향후과제로 제기되었다. 김지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미와 과제’, 경남정책brief (2008. 1.), 1-8면 참조.
  - 10) 하지만 인권위구성의 한계와 인력 및 예산부족등으로 시행과정에서 인권위와는 별도의 장애인권리옹호제도(P&A)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P&A)’시스템방안연구”장애인권리옹호체계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2014) ; 임성택외1,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도입과 과제, 장애인법연구(2015) ; 서재경외2, ‘한국장애인권리옹호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추진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2호 (2016), 141-165면 참조.
  - 11) 당시 장추련은 장차법 제26조 제6항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을 근거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인 배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형사소송 최초로 의사소통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 12) 장차법 시행후 매년마다 장차법 제정 또는 시행 ○주년을 즈음하여 공청회, 세미나등의 행사가 개최되었고, 특히 인권위 주최로 매년 특별한 주제(모니터링, 인권조례, 권리옹호, 장애인권리협약등)를 정하여 장차법 이행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의견수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장차법 시행후 이행점검을 진행한 결과, 법에 ‘명시’된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장차법 제19조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각 지자체의 경우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비율<sup>13)</sup>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고, 고속버스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또한 장차법 제32조는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비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영방송 등에서는 그나마 시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는 여전히 도가 넘은 장애인비하 발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방송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14)</sup>

또한 제정 때부터 걱정했던 강제력의 부족인데, 그 중에서도 처벌 조항 미비가 여전히 문제다.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①인권위 시정권고-법무부 시정명령-법원 과태료, ②손해배상, ③형사처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받아내더라도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권고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손꼽을 정도이다.<sup>15)</sup>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위자료료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 실제로 이용이 어려운 것이다.<sup>16)</sup> 나아가 형사처벌은 거의 유명무

13) 국토부의 2017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결과발표에 의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저상버스 보급 확대 비율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지자체는 충청남도(7.2%)였고, 경상북도 10.3%, 전라남도 10.9% 순이었다. 저상버스 운행노선 비율은 대구시가 80.5%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71.2%, 대전시 50%, 부산시 45.1% 순으로 나타났다. 에이블뉴스(2018.4.2.자 기사)참조.

14) 이에 대하여 장애인계는 개인방송도 방송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5) 시정명령권의 실효성 확보는 모든 개정의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슈다.

16)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차별 개선 유인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13건의 판결에서 19명이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70%에 가까운 13명이 3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다.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일부 승소의 경우, 인용되지 못한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피고인과 분담하게 되어있다. 소송비용이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을 넘어서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셋째,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청구 인용율이 낮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율은 48.1%인데 반해, 적극적 조치는 21.4%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늘 거론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서울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던 장애인이 계단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신길역과 서울교통공사 측은 안전 관리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에이블뉴스(2018.3.16.자 기사)

실한 상태다. 장차법 제49조에 따른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려면 악의성(惡意性)이 인정되어야 하고, 악의성 인정을 위해서는 ①차별의 고의성, ②차별의 지속성과 반복성, ③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건 실제로 쉽지 않으므로 결국 형사처벌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다.<sup>17)</sup>

끝으로 제정당시에는 크게 예상하지 못한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건 장차법의 존재감의 하락이다. 형사소송 제기나 판결과정에서 장차법을 근거로 한 기소나 판결이 소수라는 점이다. 그 중 장차법 단독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거의 전무하다. 또한 유죄를 받더라도 유죄판단과 양형에 장차법의 기여가 없다는 점은 장차법의 존재감을 사회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장차법 제정시부터 제기되었던 한계들이 시행과정에서 그대로 노정되었을 뿐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장차법을 둘러싼 불만과 이의가 이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 Ⅲ. 장차법의 앞으로의 10년의 전망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헌법개정의 흐름에 맞추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장차법 개정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헌법적 ‘장차법’의 위상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쌓여왔던 ‘적폐청산’ 차원의 개정 그 자체에 대한 기획이외에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이를 헌법적 장차법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개선’ 프로젝트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는 장차법 개정을 넘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속도를 내기 위해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장차법개정’이라면, 도로를 넓히고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장차법환경개선’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장차법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시혜와 복지’에서 ‘권리’로의 이행을 넘어, 이제는 ‘권리’의 장을 넘어 ‘문화’의 장으로 도약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점이다.

17) 더불어민주당(김상희)에서 형사처벌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정의당(윤소하)에서는 시정 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 1. 장차법 개정운동

### 가. 현재의 개정작업의 패러다임

작년(2017년)에 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장차법개정안수렴토론회<sup>18)</sup>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장애인법연구회’(발표자: 박중운변호사)가 제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사항’은 지난 10년간 장애인계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던 개정요구사항<sup>19)</sup>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요구사항의 일부는 실제로 개정절차를 거쳐 입법화되기도 하였다.<sup>21)</sup> 본 고에서는 장차법의 구체적인 조항의 개정의견이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개정의견들이 단지 개별조항에 대한 내용이라면 필자는 이를 유형화하고 체계화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개정작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 나. 유형화 작업과 패러다임의 전환

우선 개별조항들의 개정들을 유형별로 나누어보고 이를 토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1) 이념적 개정

장차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관련법률들의 개정도 견인해낼 수 있는 이념적·선도적 규

- 
- 1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개정안수렴토론회 자료집’(2017) 참조.
- 19)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또는 개정요구사항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면, ①장차법 제1조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직접차별에 한정된 점, ②장차법 제4조 차별행위에 괴롭힘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③장차법의 제4조 2항 정당한 편의 개념에서 비물리적인 편의를 배제하고 있는 점, ④장차법 제11조 고용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이 협소한 점, ⑤장차법 제13조 교육부분에서의 차별금지 항목 미흡한 점, ⑥장차법 제15조 재화·용역 제공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 ⑤장차법 제11조에서는 수화통역사나 낭독자 등 정당한 편의제공자에 대한 자격에 관해 아무런 규율이 없는 점, ⑥장차법 제15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 및 향유를 위해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라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나와있다. ⑦장차법 이행에 대해 실태조사 또는 모니터링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등이 많이 거론되었다.
- 20) 장애인법연구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개정사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장차법개정안수렴토론회자료집』(2017)
- 21) 장차법 제24조의 2 신설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정의 개정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장차법 제2조의 장애개념에 대한 개정논의는 ‘이념적’(ideological) 개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손상중심적, 의료적, 기능제한적 접근법 모델로부터 인권적, 사회적, 사회정치적 접근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조문의 개정은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련성이나 장애인복지법과도 연관되어 있는 개정으로 장애인법의 바탕이 되는 표준을 정하는 중요한 조문이라 할 것이다.

## (2) 정책적 개정

장차법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누락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 수정이 필요한 영역등을 고려하여 장차법의 전체적인 체계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적 판단작업을 수반하는 개정영역이다.

이러한 개정유형에는 개념의 확장이나 추가가 그 전형적이 예라 할 것이다. 장차법 제3조의 사용자의 정의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라거나, 제3조 정의란의 제1호 ‘관광’의 개념을 넓힌다든가 제3호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정의함에 있어 ‘기구’를 ‘기기’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개정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예를 들어, 장애인차별담담관제도)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개정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연결적(관련적) 개정

장차법 제정이후 관련법령들이 많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이러한 제·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장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개정작업을 통해 장차법이 다른 법령들과의 연계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개정작업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법률제정(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법<sup>22)</sup>등의 연관성에 있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개정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장차법 내부에서의 개정작업 뿐만 아니라 장차법 외부와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장차법 ‘자체’의 개정보다는 장차법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이를 조성 및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차법 환경조성 및 개선 작업에 대한 의견을 보다 비

22) 정식명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제정, 2015. 11. 21.시행)

중 있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차별성은 이하의 설명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이 쟁점들에 대하여는 필자가 종전에 유지했던 관점을 전환하는 주장도 담고 있다.

## 2. 장차법 환경개선작업

### 가. 제도적인 환경개선

####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보장법」과의 관계

장차법 제정 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한때 장차법제정추진동력을 잃을 뻔 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한 토론회에서 필자는 ‘커피숍 유리창’ 비유를 든 적이 있었다. 어떤 커피숍에 가면 밖에서는 거울과 같이 내부가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만 외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가진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을 상정하면서 장차법의 시각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보이지만, 포괄적차별금지법에서는 장차법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장차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장애인계내에서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또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의 새로운 정의’, ‘개인별지원체계’, ‘권리옹호체계도입’, ‘소득보장제도의 변화’, ‘탈시설명문화’등을 원칙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다.<sup>24)</sup> 이 법 제정의 제안에 대해서도 필자는 기존에 있는 장차법의 보완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취지를 살려가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필자는 권리옹호체계(P&A)의 도입과 확립은 장차법과만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도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장차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장차법과 권리보장법의 연결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sup>25)</sup>

23)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안진, ‘개별적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검토’, 법학논총(제37권 제3호)(2017.8),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37면 참조.

24) 이정훈, ‘2017 대선장애인차별철폐 대선 3대 핵심요구안’, 2017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10주년 장차법 개정안 수렴토론회 자료집, 7면 참조.

25) 이와 관련하여, 박종운, 위의 글, 자료집 62-63면에서 논의하고 있는바와 같이 ①·인권법-복지법’ 2개 체계로 분류하는 방향과 ②·기본법-인권법-복지법’의 3개 체계로 분류하는 방향에 대하여 필자는 ③·기본법’ 하나로 통일하는 체계에 대하여도 새롭게 조명해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 2) 「장애인법」으로의 이행

장차법 시행 10년을 돌아보면서 수 많은 선구자들과 더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그 보다 셀수 없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한과 눈물, 그리고 분노와 절망등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지나간다. 매년 찾아오는 장차법 제정 또는 시행 ○주년 토론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기도 하며, 여러 질문을 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필자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원했던 것들은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저 동등하게 대우받고, 정당한 배려를 나누며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기를 바랬을 뿐이었다.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법률도 뜯어고쳐야 하겠지만, 그 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원래의 소망을 다시 되돌이켜 보는 일이다.

그러기에 지난 장차법 시행 10년간의 시간은 그 전 수십년 아니 더 오랜 기간동안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요구조차 귀기울여주지 않았던 사회에 땀땀이 어깨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점이고, 이 점에 대해서 장차법에 무한한 애정과 감사를 돌리고자 한다. 그러자 이제 우리의 오랜 한 맺힌 요구가 비장애인에게도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걸음을 함께 가야할 앞으로의 10년이 있다. 그 10년 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장애인법’<sup>26)</sup>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 소망한다.

## 나. 공동체적인 환경개선

### 1) ‘비장애인’의 장차법으로서의 거듭남

장차법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무수범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사용자,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등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관련자들에 대한 차별을 행하는 ‘잠재적’위반자들로 규정하고 직접·간접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고, 시정명령, 손해배상, 형벌등의 칼을 빼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장차법을 장애인을 위한 법으로 국한시키고 비장애인을 장차법의 수범자로서의 수동적인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향후 10년의 장차법은 비장애인을 장차법의 ‘동반자’로 수용하고 초대하는 형태로 진행

26) 필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미국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그 모델이고 그 동기는 장애인들이 의사법, 변호사법처럼 장애인법이라는 법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고, 더 이상 헌법외에는 그 어떤 다른 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애인법 그 자체 내부에서 이념과 제도를 규정짓고 바뀌나가게 되는 기초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비장애인으로 부터 수범자의 지위를 완전히 벗길 수는 없겠으나,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차법이 아니라면 진정한 규범으로서의 장차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없을 것이다.

## 2) '비당사자'의 관점에서의 시각전환

장차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무지한 대상자들로 정의한다. 그래서 장애인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장차법 제19조에서는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장차법은 비당사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홍보', '교육' 보다는 '문화학습', '정보공유'같은 용어들이 이항대립적 시각을 벗어나 모두가 장애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식하는 계기와 틀로서 작용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사용과 활용은 당사자와 비당사자간의 간격과 벽을 허물고 장애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사회를 꿈꾸게 만들 것이고, 이러한 비전과 꿈이 제도를 넘어 정신으로 정착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 다. 문화적인 환경개선

### 1) 문화창조자로서의 장차법

장차법은 장애인이 문화의 수용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를 향유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제도개혁의 핵심에는 비장애인만 누린 문화, 나도 누리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예를 들어, 장차법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배제·거부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담겨져 있다. 이는 오랫동안의 장애인의 문화영역에서의 소외를 반영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의 국외자에서 벗어나 향후 10년의 장차법에서는 '문화창조자', '문화창달자'로서의 장애인이 등장해야 할 시기가 되었고, 장차법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룰 주제로 등장해야 한다. '소수자' 문화는 늘 존재해왔고 이는 이른바 '다수자'의 문화에 새로운 충격과 도전을 주어왔다. 앞으로 장애인문화는 생산자로서 등장할 것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중 지금까지 '향유권'에 맞춰진 시각을 '창작권'으로 확대하는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7)</sup> 위에서

27) 주윤정, '선진국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정책과 현황', 2011년도 풀뿌리장애인문화예술활동 활성화 Workshop자료집(2011); 홍애령,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장애인무용의 개념

언급한 바와 같이 장차법 제24조는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향후 10년은 ‘창작’에 관심과 초점을 맞출 시기가 되었다. 장애인들이 문화창조자로서 우뚝 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철폐하는데 새로운 장차법 미래 10년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sup>28)</sup>

## 2) 문화로서의 장차법

지금까지의 장차법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장애인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의무 규정으로서 다가갔다. 이러한 장차법을 필자는 ‘하드장차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제 ‘하드장차법’의 시대가 가고, ‘소프트장차법’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장차법이 문화가 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비문화인으로서 질시 받는 대상이 되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의 근원지로서의 장차법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sup>29)</sup>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 단지 도움 받고 불쌍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당연한 주체로서 인식되고, 사회활동의 동반자로 인식될 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을 배려하듯,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지키는 사회로 발전해왔다. 장차법 10년의 미래는 그러한 문화사회를 꿈꾸며 진행되어야 하고 비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퍼져나가야 한다. 기존 장차법의 ‘차별금지’ 문구는 ‘차별해소’ 내지는 ‘배려의무’라는 문구로 대체되면서 차별문화는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교육, 홍보, 모니터링, 인식개선’이라는 문구를 넘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키워드인 ‘공유, 배려, 참여’등의 문구가 장차법에도 그리고 장차법문화에도 더욱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및 가치재탐색’,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1호(2015), 78-102면; 한지연외1, ‘지역사회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역량강화에 관한 현상학적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제44권 제3호(2016), 296-324면등 참조

- 28)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종래 정보접근권이 전자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스마트환경을 이용한 가치와 문화창출자로서의 장애인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삶의 범위확장의 관점에서 즉 ‘수동적 향유자’에서 ‘능동적 창조자’로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설정하고, 정보망에서라도 장애없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9) 사후적구제보다는 사전적예방이 중요하고, 사전적예방의 핵심은 차별없는 사회문화조성을 도모하여 장차법의 안정적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진정사건처리현황에서 ‘조사중해결’이 50%에 해당하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정호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진정사건현황 및 분석’, 자료집 100면 <표13> 참조. 위 도표에 의하면 2008. 4. 11.-2016. 12. 31.중 접수된 진정건중 조사대상건수(4,608건)중 2,335건이 조사중해결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영역을 기준으로 한 외국사례연구-미국 장애인법과 호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2011), 6면.

## IV. 맺는 말-초심으로 돌아가서

장차법의 제정은 오랜 시간 억압과 차별의 상징이었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었던 범장애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의 깃발, 하나의 이상아래 단체간, 장애유형간, 개인간의 그 동안의 여러 갈등과 오랜 대립은 큰 용광로에서 녹아내렸다. 그러한 통합의 정신이 장차법의 뿌리에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제 새로운 헌법, 새로운 장차법은 장애인계내에서 이룩한 놀라운 하나됨의 정신을 더 확장하는 걸음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장차법 시행 10년을 거치면서도 장애인계와 비장애인계 사이에 아직도 녹여내지 못한 서먹함과 어색함을 완전히 녹여낼 새로운 봄기운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것이 장차법 제정의 정신이었고, 장애인들의 초심이었다. 그 때의 한걸음 한걸음이 역사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다. 이제 내딛는 새로운 도약은 우리 공동체가 미래가 되고 신화가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김범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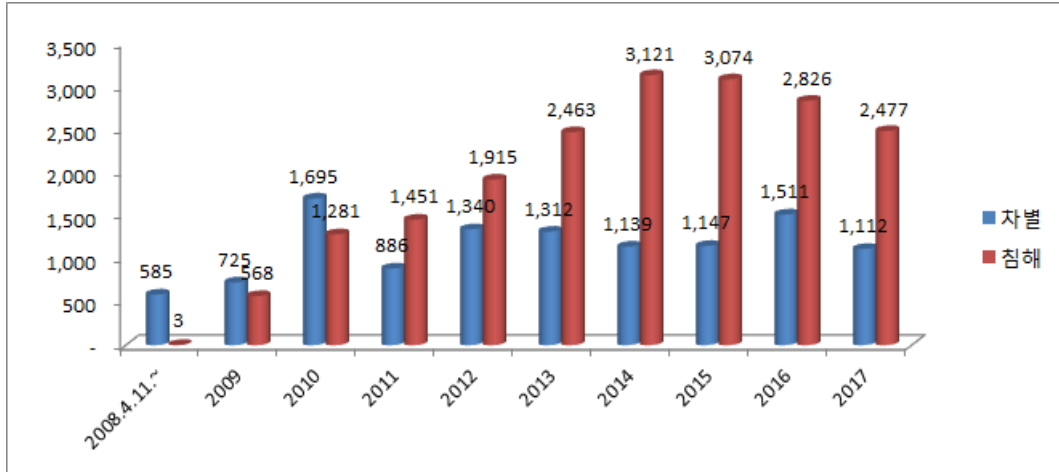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진정사건 분석

김범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조사팀장)

### I.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30,631	11,452	19,179	
2008.4.11.~	588	585	3	
2009	1,293	725	568	
2010	2,976	1,695	1,281	
2011	2,337	886	1,451	
2012	3,255	1,340	1,915	
2013	3,775	1,312	2,463	
2014	4,260	1,139	3,121	
2015	4,221	1,147	3,074	
2016	4,337	1,511	2,826	
2017	3,589	1,112	2,477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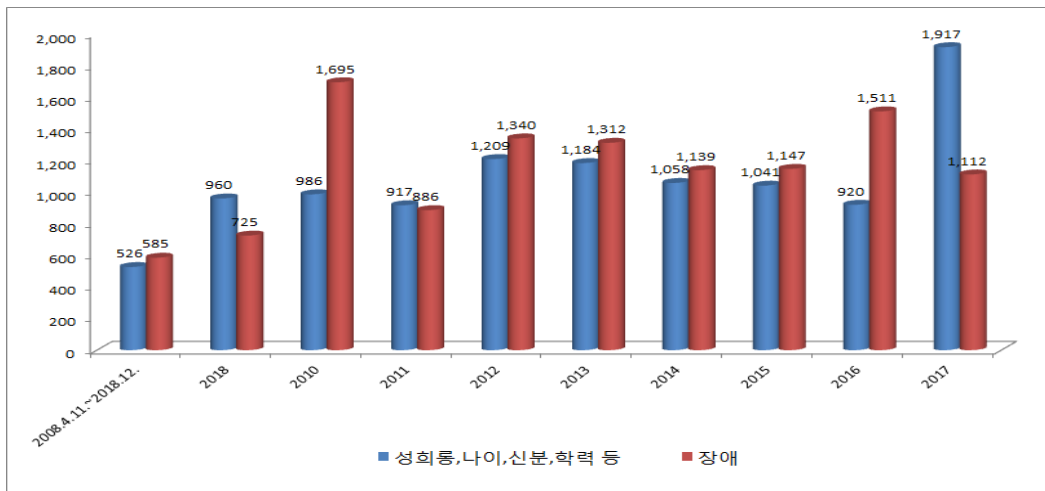
## Ⅱ.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 2017. 12.	진정건수	26,439	14,334	12,105
		비율(%)	100.0	54.2	45.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 2017. 12.	진정건수	22,170	10,718	11,452
		비율(%)	100.0	48.3	51.7
	2008. 4. 11. ~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2010. 1. ~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 2015. 12.	진정건수	2,188	1,041	1,147	
	비율(%)	100.0	47.6	52.4	
2016. 1. ~ 2016. 12.	진정건수	2,431	920	1,511	
	비율(%)	100.0	37.8	62.2	
2017. 1. ~ 2017. 12.	진정건수	3,029	1,917	1,112	
	비율(%)	100.0	63.3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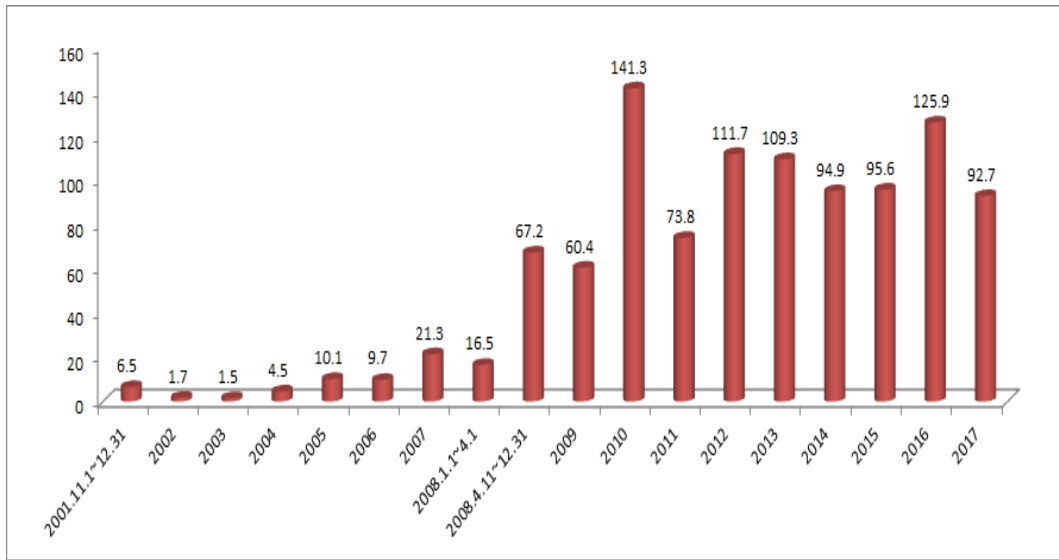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애법 이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 진정 건수	12,105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1,452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월 평균	62.4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98.1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125.9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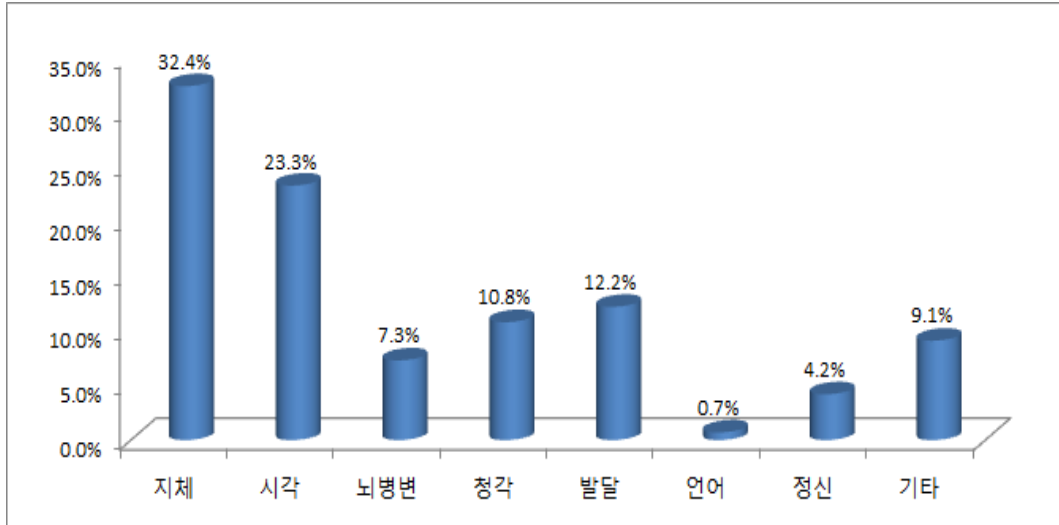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비율	100.0	32.4	23.3	7.3	10.8	12.2	0.7	4.2	9.1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5.0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4	8.1	24.1	0.9	5.4	5.4
2012	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2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8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5	8.1	9.8	9.1	1.1	4.8	6.2
2015	건수	1,147	334	440	93	101	101	5	30	43
	비율	100.0	29.1	38.4	8.1	8.8	8.8	0.4	2.6	3.8
2016	건수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비율	100.0	41.6	21.8	6.7	6.2	16.4	0.5	4.1	2.9
2017	건수	1,112	313	370	97	98	102	12	52	68
	비율	100.0	28.2	33.3	8.7	8.8	9.2	1.1	4.7	6.1
등록 장애인 구성비 <sup>1)</sup>	인원 (명)	2,511,051	1,267,174	252,794	250,456	271,843	218,136	19,409	100,069	131,170
	비율	100.0	50.5	10.1	10.0	10.8	8.7	0.8	4.0	5.2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6. 12. 기준(보건복지부)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201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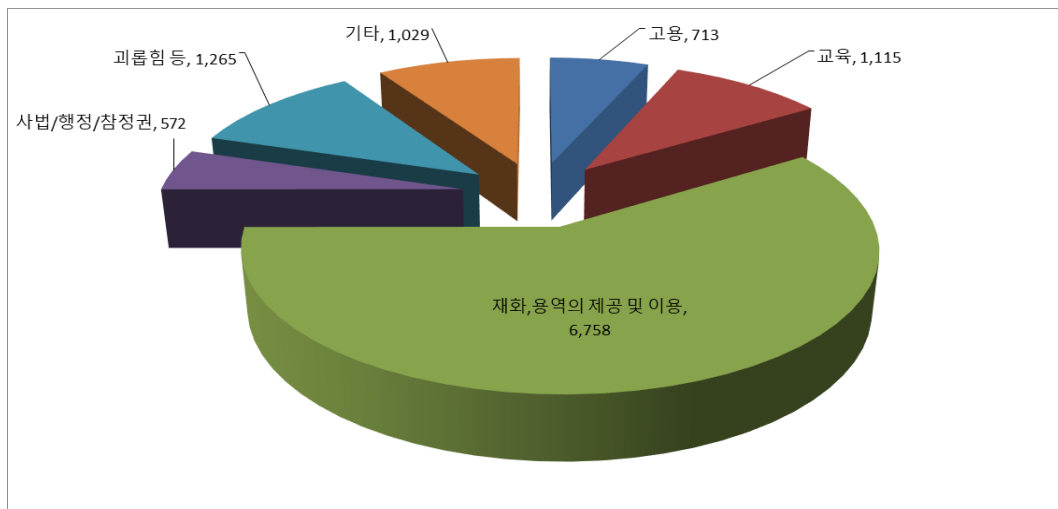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11,452	713	1,115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1,265	1,029
	비율	100.0	6.2	9.7	59.0	15.5	6.3	12.2	7.1	15.1	2.8	5.0	11.1	9.0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6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7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0	8.3	5.8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7	69	55	733	129	82	125	99	286	12	38	121	131
	비율	100.0	6.0	4.8	63.9	11.2	7.2	10.9	8.6	24.9	1.1	3.3	10.6	11.4
2016	접수	1,511	56	536	643	251	48	117	58	161	8	62	88	126
	비율	100.0	3.7	35.5	42.6	16.6	3.2	7.7	3.8	10.7	0.5	4.1	5.8	8.3
2017	접수	1,112	81	90	676	213	46	135	107	168	7	31	91	143
	비율	100.0	7.3	8.1	60.8	19.1	4.1	12.1	9.6	15.1	0.6	2.8	8.2	12.9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2016. 1. 1. ~ 2016.12.31.	2017. 1. 1. ~ 2017.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년 (2008. 4. ~ 2017.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11,452
	월평균	8.4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92.7	98.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81	713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6.1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90	1,115
	월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7.5	9.6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3	676	6,758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6	56.3	57.9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8	62	31	572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2	5.2	2.6	4.9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4	234	2,294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8	19.5	1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고용	713	260	73	58	111	55	15	42	99	
교육	1,115	439	85	58	92	353	6	14	68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이용	재화·용역 일반	1,780	578	398	207	140	251	13	65	128
	보험·금융	721	157	144	72	131	106	8	57	46
	시설물 접근	1,400	960	196	113	16	16	2	5	92
	이동 및 교통수단	808	399	172	70	26	40	5	2	94
	정보접근·의사소통	1,729	39	1,188	17	343	27	6	2	107
	문화·예술·체육	320	66	27	17	62	119	-	7	22
사법·행정	405	79	86	21	46	76	5	49	43	
참정권	167	59	32	7	3	8	-	3	55	
괴롭힘 등	1,265	331	74	120	214	254	13	151	108	
기타	1,029	347	191	78	51	89	12	79	182	

###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 가. 고용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 계	합계	713	262	96	72	16	31	159	7	70
	비율	100.0	36.8	13.5	10.1	2.2	4.4	22.3	1.0	9.8
	공공	240	128	10	34	12	9	20	4	23
	민간	473	134	86	38	4	22	139	3	47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5	23.2	1.5	1.5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4	1.5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0	3
	비율	100.0	48.2	8.9	8.9	3.6	3.6	21.4	0	5.4
	공공	24	16	0	2	1	1	2	0	2
	민간	32	11	5	3	1	1	10	0	1
2017	합계	81	17	13	13	1	5	18	4	10
	비율	100.0	21.0	16.1	16.1	1.2	6.2	22.2	4.9	12.3
	공공	29	11	3	5	1	3	2	2	2
	민간	52	6	10	8	0	2	16	2	8

나. 교육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 계	합계	1,115	91	61	205	134	88	42	494
	비율	100.0	8.2	5.5	18.4	12.0	7.9	3.8	44.3
	공공	937	50	35	156	121	85	31	459
	민간	178	41	26	49	13	3	11	35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비율	100.0	0.8	1.1	15.1	16.4	0.2	0.8	65.7
	공공	526	3	5	80	87	1	0	350
	민간	10	1	1	1	1	0	4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비율	100.0	21.1	3.3	35.6	7.8	2.2	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민간	13	1	1	2	1	0	1	7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비율	100.0	26.3	10.7	20.7	12.0	25.6	4.7	100.0
	공공	2,674	733	67	596	474	558	206	540
	민간	4,084	1007	654	804	334	1171	114	32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5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2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33	129	82	125	99	286	12	38
	비율	100.0	17.6	11.2	17.1	13.5	39.0	1.6	100.0
	공공	188	38	8	38	35	65	4	36
	민간	545	91	74	87	64	221	8	2
2016	합계	643	251	48	117	58	161	8	62
	비율	100.0	39.0	7.5	18.3	9.0	25.0	1.2	100.0
	공공	208	87	9	45	39	27	1	60
	민간	435	164	39	72	19	134	7	2
2017	합계	676	213	46	135	107	168	7	31
	비율	100.0	31.5	6.8	20.0	15.8	24.9	1.0	100.0
	공공	258	80	4	43	78	50	3	29
	민간	418	133	42	92	29	118	4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265	26	32	28	209	144	728	98
	비율	100.0	2.1	2.5	2.2	16.5	11.4	57.6	7.7
	공공	182	7	3	4	35	5	108	20
	민간	1083	19	29	24	174	139	620	78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1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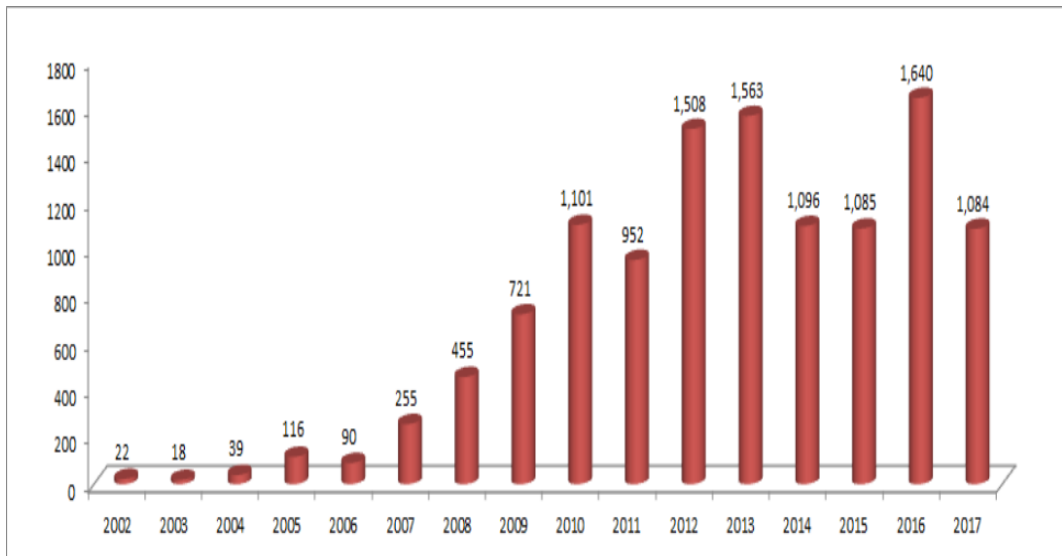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8	1	0	3	20	3	50	11
	비율	100.0	1.1	0	3.4	22.7	3.4	56.8	12.5
	공공	19	0	0	0	5	0	10	4
	민간	69	1	0	3	15	3	40	7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비율	100.0	4.4	2.2	1.1	18.7	13.2	55.0	5.5
	공공	19	1	1	0	6	0	10	1
	민간	72	3	1	1	11	12	40	4

##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45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4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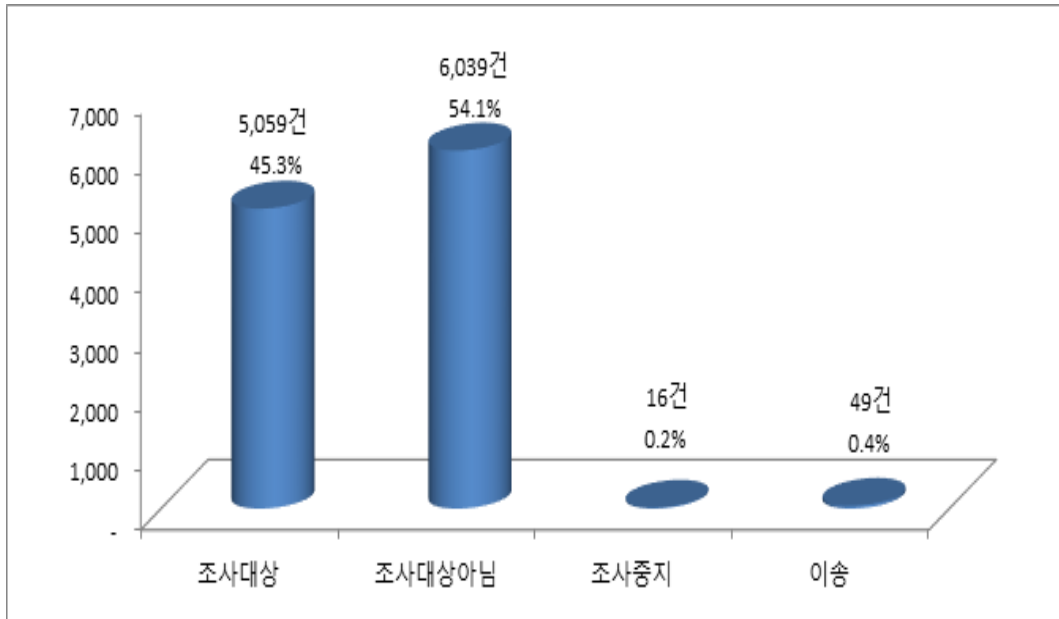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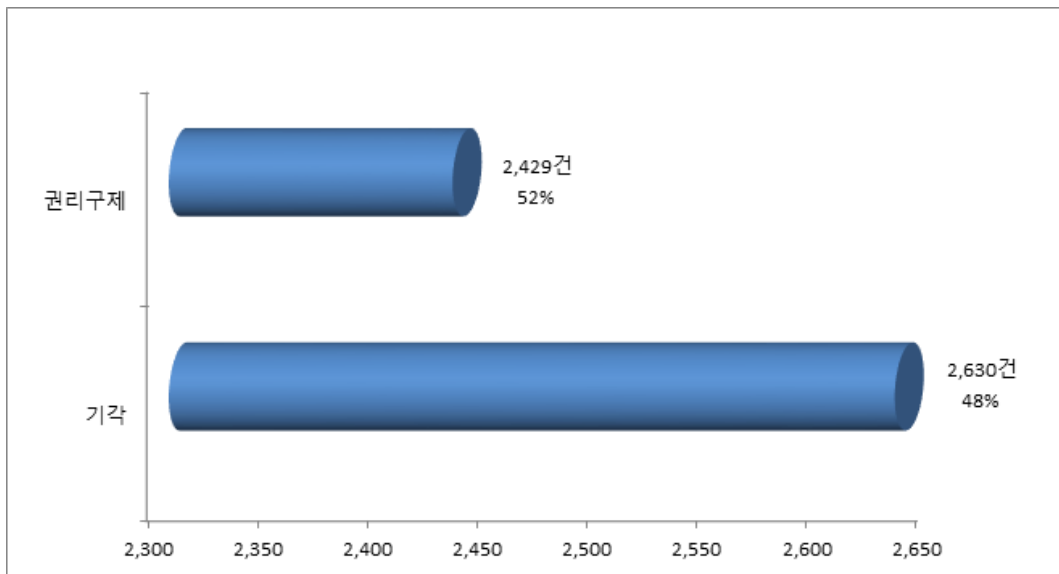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b>합계</b>	<b>11,163</b>	<b>5,059</b>	<b>2,429</b>	<b>452</b>	<b>5</b>	<b>376</b>	<b>1,596</b>	<b>2,630</b>	<b>6,039 (4,514)</b>	<b>16</b>	<b>49</b>
구성비 (%)	100.0	100.0	100.0	18.6	0.2	15.5	65.7				
			48.0					52.0			
		45.3							54.1	0.2	0.4
2008년	413	191	104	22	-	12	70	87	221 (139)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22.2	-	11.5				
			54.5					45.5			
									46.2	53.5	0.2
2009년	721	358	165	10	-	47	108	193	353 (238)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6.1		28.5	65.5				
			46.1					53.9			
		49.7							49.0	0.6	0.8
2010년	1,101	417	242	28	1	56	157	17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1.6	0.4	23.1	64.9				
			58.0					42.0			
		37.9							60.2	0.5	1.4
2011년	952	566	307	124	-	32	151	259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40.4	-	10.4	49.2				
			54.2					45.8			
		59.5							40.0	0.1	0.4
2012년	1,508	890	376	116	-	20	240	514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30.9	-	5.3	63.8				
			42.2					57.8			
		59.0							40.8	0.1	0.1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436	29	-	79	328	371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6.7	-	18.1	75.2				
			54.0					46.0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200	17	1	61	121	328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8.5	0.5	30.5	60.5				
			37.9					62.1			
		48.2							51.1	0.3	0.5
2015년	1,085	416	164	17	-	19	128	252	663 (561)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10.4	-	11.6	78.0				
			39.4					60.0			
		38.3							61.1	-	0.6
2016년	1,640	434	209	19	3	29	158	225	1,199 (1,048)	-	7
구성비 (%)	100.0	100.0	100.0	9.1	1.4	13.9	75.6				
			48.2					51.8			
		26.5							73.1	-	0.4
2017년	1,084	452	226	70	-	21	135	226	628 (525)	-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1.0	-	9.3	59.7				
			50.0					50.0			
		41.7							57.9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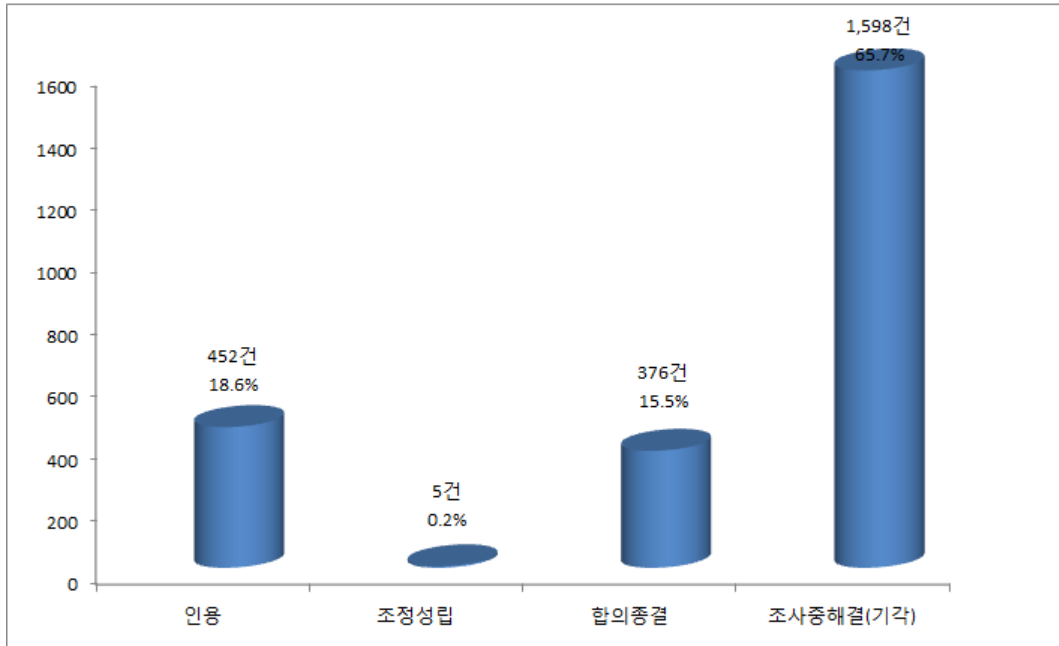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 다. 차별영역별 장애자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건수	11,163	5,059	452	5	376	1,596	2,630	6,039 (4,514)	16	49
	비율(%)	100.0	100.0	48.0				52.0			
				45.3				54.1	0.2	0.4	
고용	건수	828	287	22	-	51	30	184	533 (426)	3	5
	비율(%)	100.0	100.0	28.9				64.1			
				34.7				64.3	0.4	0.6	
교육	건수	3,464	235	19	-	32	99	85	3,228 (2,451)	-	1
	비율(%)	100.0	100.0	63.8				36.2			
				6.8				93.1	-	0.1	
재화·용역	건수	4,288	3,794	339	4	210	1,346	1,895	476 (433)	9	9
	비율(%)	100.0	100.0	50.1				49.9			
				88.5				11.1	0.2	0.2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건수	2,583	743	72	1	83	121	466	1,802 (1,204)	4	34
	비율(%)	100.0	100.0	37.3				62.7			
				28.8				69.7	0.2	1.3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 라. 장애자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괴롭힘 등
권고 사건 수	452	22	19	339	72

## V.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 정판결/ 헌법재 판소결 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	
합계	6,039	970	31	121	79	144	10	62	4,514	92	6	10
구성비(%)	100.0	16.1	0.5	2.0	1.3	2.4	0.2	1.0	74.7	1.5	0.1	0.2
2008년	221	54	1	6	11	2	1	2	139	5	-	-
구성비(%)	100.0	24.4	0.5	2.7	4.9	0.9	0.5	0.9	62.9	2.3	-	-
2009년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구성비(%)	100.0	15.9	-	2.5	1.4	3.9	0.3	2.8	67.5	5.4	0.3	-
2010년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	0.9	55.7	1.9	0.2	-
2011년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
2012년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구성비(%)	100.0	10.0	0.4	2.3	1.5	2.6	0.6	1.5	80.4	0.5	-	0.2
2013년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	0.8	60.8	1.2	0.1	0.1
2014년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구성비(%)	100.0	9.3	0.5	1.4	1.9	3.0	0.2	0.4	80.8	1.8	-	0.7
2015년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구성비(%)	100.0	7.4	0.2	1.2	1.1	2.1	0.2	1.8	84.6	1.2	-	0.3
2016년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2	-	0.3	87.5	0.3	-	0.1
2017년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구성비(%)	100.0	9.6	0.2	1.8	1.1	1.9	0.2	0.8	83.6	0.8	-	0.2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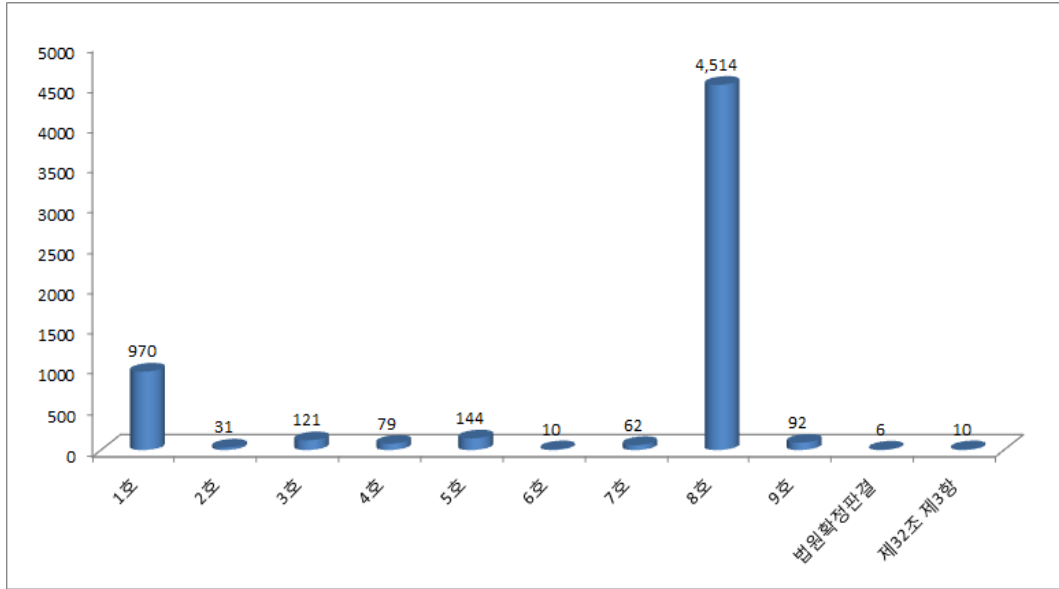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1,224건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제32조 제3항: 조사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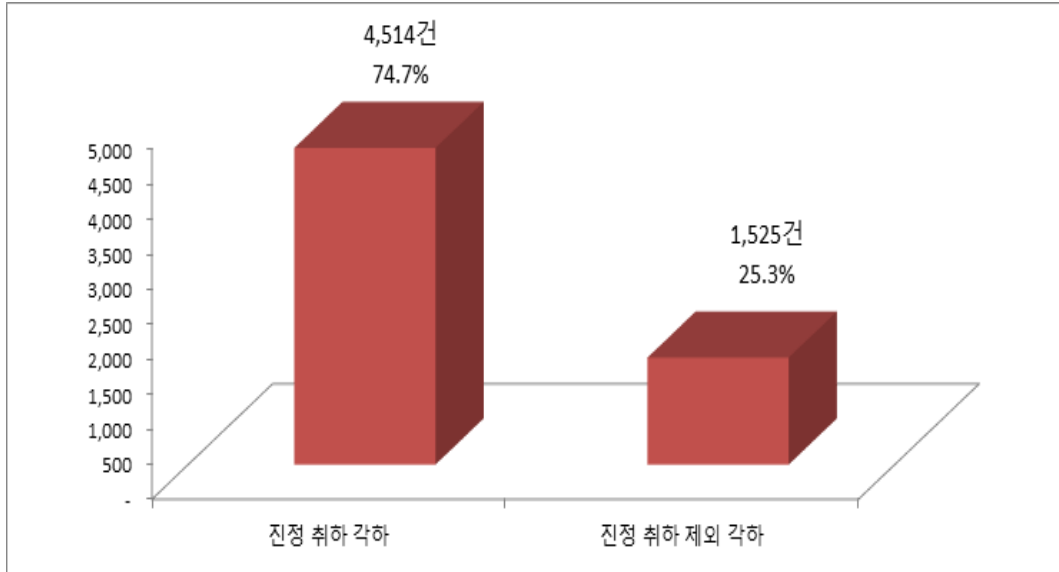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1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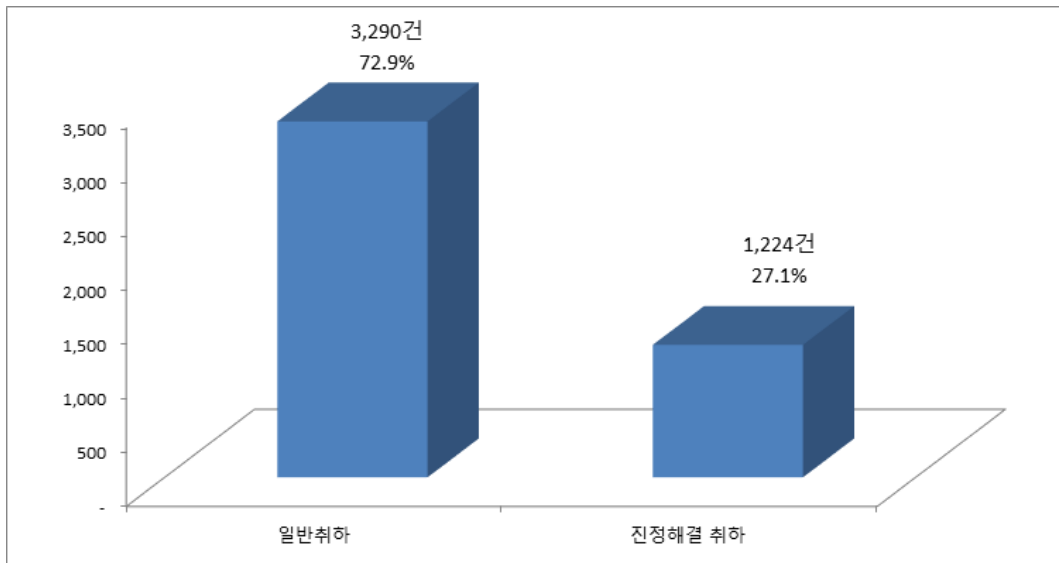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각하 처리건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8호)	
	취하 구분	취하 건수
6,039	4,514	
	취하 구분	취하 건수
	사건수	3,290
	취하사건중 해결 %	72.9%
	진정해결 취하	1,224
	진정해결 취하	27.1%



[그림 11] 각하 사건 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 ~ 2017.12.31.)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 ~ 2017.12.31.)

## 붙임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 건 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7	16-직권-0002400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28	17-직권-00004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9	17-직권-000130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붙임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7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질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7)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제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의 “20.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7)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훈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 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계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li> <li>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li> <li>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li> <li>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li> <li>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li> </ol>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li> <li>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li> <li>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li> <li>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li> <li>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li> <li>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ol>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닥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건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란다.</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메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란다.</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p>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p> <p>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2.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p>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p>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lt;추가&gt;「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lt;추가&gt;「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lt;추가&gt;「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lt;추가&gt;「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lt;추가&gt;「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lt;추가&gt;「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3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lt;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gt;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p>2. (주)000, (주)00백화점, 00쇼핑(주), (주)00리테일, (주)0000, (주)000, 00000유통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lt;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gt;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44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교육부장관에게,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p>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 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p> <p>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람.</p> <p>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랍.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랍. 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랍.
4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설치대상 시설에포함될수있도록, <별지1>을참고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1]과 [별표2]를개정하기바랍.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아니거나또는편의시설을설치하기가구조적으로곤란한 경우에도장애인의접근, 이용이가능한위치에서장애인에개인적서비스제공등대안적조치가강구될수있도록, <별지2>를참고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8조를개정하기바랍.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 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 2. 기획재정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의 예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 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하며, 건물구조변경및세부기준적합등세액공제요건이완화될수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9]를개정하기바랍. 3.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의 예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 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기바랍.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국토교통부장관은,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별지 3>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하기바람. 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실무교육시장에 인편의 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바람. 5.시·도지사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바람. 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2017)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함.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 접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관광시설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 관련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도 차별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2017. 2. 14.)
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 전 당사자 및 가족, 정신의료기관, 시설관계자 등이 언론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 기준의 보완’, ‘행정입원 시 요건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항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1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li>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li> <li>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li> </ol>
52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li> <li>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li> </ol>
5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함</p>

###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주요 권고현황(2008.04.11~2017.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러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시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의 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증앙회장애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증앙도서관장애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신과질환 사회복지무원 소집 순위차별 (16진정1022500)	-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7.4.3	일부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764100)	-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7.4.3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등 (16진정10382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7.3.6	검토중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li> <li>-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li> </ul>	2008.12.22.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리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li> </ul>	2008.12.26.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경0710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ul>	2012.1.10.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경0175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li> </ul>	2012.6.13.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경0180600)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경0181100)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경087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li> </ul>	2014.8.20.	수용
9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경030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li> <li>-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정 할 것</li> </ul>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2014.12.16.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급에 대한 하절기 냉방장치 미가동에 의한 차별 (17진정0627100)	- 00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편의 미제공 등 (16진정0644000)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 -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검토중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4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촉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 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 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6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제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애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애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입대시 장애차별 (10진정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 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 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정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속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속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애에게 재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애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 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17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18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 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란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 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한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 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 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 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 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로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li> <li>-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5.17.	일부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ul>	2011.5.17.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6.30.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li> <li>-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자의 장애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6.30.	수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li> <li>-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li> </ul>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 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 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 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을 권고	2011.7.22.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 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34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 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 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 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 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 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 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법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l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법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li> </ul>	2011.11.28.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11.28.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li> </ul>	2011.12.19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li> <li>-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li> </ul>	2012.1.10.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 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li> <li>-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li> </ul>	2012.3.23.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li> </ul>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제심사 할 것과, 보 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 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 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	2012.5.1.	일부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 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 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 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 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 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 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 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9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li> <li>-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li> </ul>	2012.7.18.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li> <li>-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2.7.18.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li> </ul>	2012.8.22.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li> </ul>	2012.8.22.	수용
54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li> </ul>	2012.11.29.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동등하게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도록「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 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 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7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5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게 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 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 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 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 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 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 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 의 중앙대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 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 련하여 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 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 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 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 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 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 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2015.9.18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 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 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마크드 생성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 면서 동시에 사 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 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과 산하기관의 점자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권고	2016.12.28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12.28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 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 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14진정08875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6.11.14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연금 및 생계급여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하기 바람	2016.10.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임대 거부 (17진정0861100)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12.1	검토중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16진정096240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핵심사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보험심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험인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017.12.1	검토중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위반 등 장애인차별 (17진정0146600)	- 아파트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 000시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DX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6진정0134300)	- 중증장애인의 4DX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 - 4DX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2017.10.31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등 장애인 차별 (17진정0709700)	- 00아파트 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6676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7.7.3	일부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4063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불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 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2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 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을 권고	2010.11.15.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 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 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 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 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2008.12.3.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 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 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등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 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 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 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 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 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li> <li>-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li>-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li> </ul>	2011.6.7.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li> <li>-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li> </ul>	2011.11.1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li> <li>-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li>-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li> </ul>	2011.11.10.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li> <li>-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li> </ul>	2012.2.13.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li> </ul>	2012.5.25.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li> </ul>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식품제조업체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7진정0662500)	-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9.12	검토중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학교수의 장애인 비하 발언 (17진정0270400)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 (17진정0169100)	-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한국00000공단 00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6.12	수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현안토론 1

##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및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송정문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UN장애인권리협약<sup>1)</sup>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계획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통해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보장구 지원이나 의료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정책 등 제도적 시스템과 관심은 거의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명시된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와서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이념(제2조)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시행하는 법이다.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sup>2)</sup>에 대해

- 1)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2008년 국제법으로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08년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 2009년부터 발효되었음.
- 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걱정하지 못한 고용·노

서도 다섯 가지 사항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이념이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그 하위 조항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수준의 임의 조항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과연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의문이다. 게다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광역시·도로 한정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문제 등도 안고 있다.

이에 본 토론문을 통해 장애인건강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관리 실태

장애인의 7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전 국민의 비만 유병률은 31.9%인데 비해 장애인의 비만 유병률은 39.4%로 더 높으며, 국민 전체의 우울감 경험률이 10.3%, 자살생각률이 4.2%인데 비해 장애인은 각각 24.5%, 19.9%로 건강상 그 심각성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에서 '좋다'고 응답한 국민은 34.6%인데 비해 장애인은 14.8%밖에 되지 않아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건강상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실제로 2014년과 2011년도에 조사된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1)에 의하면, 장애인 중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전체장애인의 70%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주요한 만성질환은 고혈압 52.6%,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29.7%, 당뇨병 25.1%, 요통 16.7% 등의 순이다.

---

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1〉 장애인의 만성질환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단위: %)

구분	연도별	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계
			남	여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3급)	경증 (4-6급)	
	2011	70	63.4	79.1	33.2	38.9	68.9	88.3	68.0	70.2	69.7
	2014	75.8	70.0	83.7	33.8	45.5	73.3	92.0	74.4	75.8	75.2
만성질환 유형별	고혈압	52.6	51.7	53.5	-	17.4	48.1	63.5	47.0	55.5	52.2
	이상지혈증	12.4	11.4	13.5	1.5	4.7	13.8	13.1	10.2	13.5	12.2
	뇌졸중	12.9	13.7	12.0	0.7	2.5	11.3	16.2	18.9	9.2	13.0
	심근경색증	4.5	5.0	3.9	1.4	0.8	2.7	6.5	3.9	4.9	4.5
	협심증	4.8	4.3	5.4	-	0.6	3.3	6.7	3.5	5.7	4.9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	29.7	18.4	42.5	2.6	7.1	21.3	40.3	21.1	34.5	29.3
	류마티스관절염	3.5	1.6	5.6	-	2.0	3.0	4.2	2.4	4.0	3.4
	요통	16.7	13.3	20.5	3.4	5.9	14.7	20.4	10.8	19.8	16.3
	폐결핵	0.5	0.5	0.5	-	0.4	0.3	0.6	0.8	0.3	0.5
	천식	3.6	3.3	3.9	8.3	1.3	1.9	5.1	3.4	3.7	3.6
	폐질환 (단성기관지염, 폐기종)	2.4	2.8	1.9	3.3	1.2	1.8	3.0	2.8	2.0	2.3
	우울증	9.1	7.1	11.3	0.5	17.6	9.2	7.6	13.2	6.1	8.8
	아트피 피부부염	2.1	2.0	2.2	19.7	3.7	2.0	1.5	3.0	1.7	2.2
	신부전	4.1	4.4	3.7	-	5.3	3.9	4.0	7.6	1.6	3.9
	당뇨병	25.1	25.9	24.2	1.6	9.7	24.5	29.0	25.3	24.5	24.8
	감상선장애	3.5	1.4	5.9	2.2	3.0	3.6	3.7	3.3	3.4	3.4
	위암	0.8	1.2	0.4	-	-	0.5	1.2	0.7	0.9	0.8
	간암	0.4	0.6	0.2	-	-	0.6	0.4	0.1	0.5	0.3
	대장암	0.7	1.0	0.3	-	-	0.5	1.0	0.5	0.8	0.6
	유방암	0.3	-	0.7	-	0.2	0.4	0.3	0.1	0.4	0.3
	자궁경부암	0.2	-	0.4	-	-	0.3	0.1	0.2	0.2	0.2
	폐암	0.1	0.2	0.1	-	-	-	0.3	0.1	0.1	0.1
	기타암	2.3	2.7	1.9	0.7	2.4	2.2	2.4	1.6	2.6	2.2
	위십이지장궤양	2.7	2.6	2.9	-	1.5	2.7	3.1	2.5	2.9	2.7
	B형간염	1.1	1.5	0.7	-	2.8	1.9	0.3	1.4	1.0	1.1
	C형간염	0.2	0.2	0.1	-	0.2	0.1	0.3	0.1	0.3	0.2
간경변증	0.7	1.0	0.5	-	0.3	1.2	0.5	0.8	0.7	0.7	
기타	37.4	38.1	36.6	69.6	56.6	34.8	34.8	43.4	33.5	37.4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 장애인 실태조사」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 실태조사」

만성질환이나 우울증 등은 장애인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 향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현황<sup>3)</sup>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 이하의 검진결과를 보이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이는 추가비용과

3)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통계는 2014년을 기준하였으나, 암 검진과 구강검진 통계는 최근 발간된 장애통계연보(한국장애인개발원, 2017)에서도 2012년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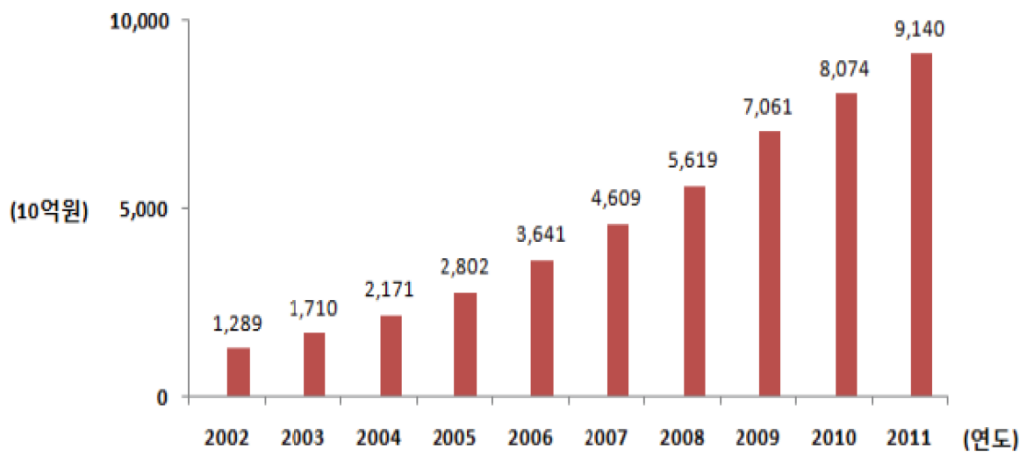
병원까지의 이동 및 차비 등의 비용문제나 가족의 무관심 등에 의한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의료기구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이 제대로 안 되어 불편함을 겪는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한국DPI의 조사결과(2016)를 보면 ‘병원에서 편의 시설 미확충으로 겪는 장애인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 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 검진	구강검진
성 별	남성	66.7	65.5	36.5	21.0
	여성	64.0	69.2	37.1	16.2
장애정도	중증	54.8	52.7	28.2	14.6
	경증	71.1	74.5	40.1	21.3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한 기본적인 건강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상당수이다보니 매년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DPI, 2016에서 재인용<sup>4)</sup>).



〈그림 1〉 장애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보험 부담금액 연도별 추이

4) 국립재활원(2013). 장애인건강관리 보고서.



### 3.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 법률의 한계

이러한 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관리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 취지와는 달리 심각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도 모호할뿐더러, 권리를 보장할 책임주체는 있지만 책임주체가 그 책임에 따라 각종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시 처벌규정 또한 없는 이유 등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각 조항별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고 토론하고 싶지만 하지만 이 자리는 짧은 토론자리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지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 1) 임의조항으로 가득한 법 제정으로 인한 실효성의 한계

앞서 살펴본 장애인의 건강 및 건강관리 실태를 토대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만성질환의 관리 등 건강관리 대책, 진료비 부담의 경감, 의료시설과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 대책 등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을 살펴보면 건강검진사업<sup>5)</sup>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업<sup>6)</sup>, 그리고 절적한 편의제공<sup>7)</sup>까지도 모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행 여부는 관련 지자체의 관심 여부에 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운동 및 체육사업<sup>8)</sup>의 제공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sup>9)</sup>,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sup>10)</sup>에 관한 사항도 모두 임의조항이다.

- 5)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6) **제8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7)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8)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권리’라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부여되는 힘이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에서도 건강권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다양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은 만들지만 실질적인 장애인의 건강권은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간교한 속내가 느껴지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 2)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규정의 한계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광역시·도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의료센터)를 하나만 지정해 놓아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나타날 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예상되는 점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리학적으로 지역 내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지역병원을 잘 선택하여 지역의료센터를 지정한다 해도, 외곽에 위치한 군 지역에서는 편도 이동거리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리를 포함하면 4시간을 이동해야 한다. 게다가 경기도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어쩌면 해당 지역의료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 위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만성질환과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 
- 9)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10)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말이다. 특히 지역의료센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에 따른 정기검진은 둘째 치고 출산이 임박하여 힘든 몸을 이끌고도 광역시도에 지정된 어떤 지역의료센터를 찾아가야 전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굳이 출산 의료서비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고, 상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지역 내 단 한 곳만 지역의료센터로 지정해도 문제가 안 되는 장애인건강권법을 두고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지정된 지역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이다. 우리나라에는 병·의원이 넘쳐난다. 필자의 동네만 해도 도보로 5분 내에 접근 가능한 병·의원이 5개가 넘고, 차로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종합병원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서 전문 진료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네에 있는 병·의원과 인근 종합병원을 뒤로하고 어딘지 모를 지역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와 주위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 마크를 통해 가까운 병원에서 손쉽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인 반면, 중증장애인은 주위에 널리고 널린 것이 병원 마크를 뒤로 하고 지정병원을 찾아내기 위한 수고를 또 한 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한다.

이처럼 두 가지 문제만 생각해봐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지역의료센터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의료센터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또 있다. 6명 이상의 실무담당자만 있으면 충족되는 지역의료센터가 광역시·도 장애인의 진료 및 전문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지원 및 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점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별표4.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6명 이상의 실무담당자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명 정도의 실무담당자들이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에 명시된 광역시·도별 기본 사업<sup>11)</sup>을 수행한다는 것도 실효성의 측면에서 의문인데, 지역의료센터 내 운영기획팀,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지원팀, 장애인의료접근성향상지원팀을 구성하여 6명 이상의 실무담당자를 각 팀에 나누어 배치하도록 하고

11)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에 언급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있다. 즉, 실질적으로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2명 정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광역시·도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전문의료서비스를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정말 실효성 없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진정 마련하려 했다면, 차라리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병원이 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했더라면 장애인이 또 다른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종합병원을 이용하여 전문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동방법과 비용에 대한 고민도 지금의 구조에서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 4.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

장애인건강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법률상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외에도 방문진료 및 주치의 제도의 실질적 실현,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등의 확보,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체계 등의 개선, 적절한 예산 투입 등의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지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에 필자는 앞서 언급한 법률상의 두 가지 큰 문제를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건강권법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7~9조만이라도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제7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제8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제9조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에 관한 조항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상 '건강권'의 의미를 분명히 해석하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있어 강제조항으로의 법률 개정을 위한 권고를 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전문의료서비스의 주축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만을 담당하도록 하여 지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등 전문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이 주거하는 인근 병원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이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기존 병원에 해당 업무를 맡길 때에는 해당 병원이 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장애인이 기존 병원에서 겪어왔던 차별 등을 해소할 필요 또한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가 장애인건강권법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의 건강권이라는 미명 하에 단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건강권이라는 정의와 거창한 기본이념을 두고는 있지만, 아무런 강제조항도 없을 뿐더러 법률상 명시된 장애인의 건강권에 연관된 모든 사업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으로 또다시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 애써 달리 생각해 보지만, 만약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면 이 법은 법의 취지에 맞게 하루 빨리 전면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의 측면에서 이 땅에 개입하여 운영 중인 모든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진정 필요한 건강권에 대한 권리보장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5. 02. 17).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 개최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548)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8495)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13661)
- 한국DPI. 2016.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2017 장애통계연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현안토론 2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인의 관광활동-**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관광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바라본 장애인의 관광활동-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1. 들어가는 이야기

올해는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19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등편의법)은 그 시행이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하지만, 이렇게 관련법의 시행이 10년, 20년 긴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장애인의 일상에서의 차별은 쉽게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던 2007년 당시 장애인의 차별은 일상이었다. 당장 일상에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교육, 고용의 문제, 가족안에서의 차별 문제,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조차 보장되지 않던 문제 등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법 안에 담아내기 어려웠다.

결국 장애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안에 여행이나 관광과 같은 내용은 담기지 못하였다.

10년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시간이며, 그 변화속에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바뀌어갔다. 특히 삶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만큼 일상을 잘 유지해나가기 위해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활동 또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장애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관광이나 여행을 즐기기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실제 경험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차별과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2017년인 작년에서야 겨우 개정을 통해 관광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을 재화 용역부분에 넣게 되었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 관광호텔 등에서만 겨우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법규정은 장애인의 발걸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 1) 관광활동(여행) 현황 및 실태

국어사전에서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 풍습 등을 구경하며 유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즐거움을 위한 여행’,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여러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경관에 접촉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한다든가, 거주기를 떠나 체재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한 유형’(1966년 메드상)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활동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활동으로 누구나 즐기고 경험하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되고 있다.

전국 2,467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여행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89.5%로 약 10%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은 여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년동안 1인당 5.5회 이상 여행을 떠나고, 평균 열흘 정도의 날짜를 여행으로 보내고 있다.

일년에 한번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국내여행 해외여행으로 나누어 국민의 여행 횟수, 일수, 시기, 목적 등의 조사결과와 함께 여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내용까지 담고 있다. 하지만 2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보고서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담겨있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확립해야하는 정부부처에서조차 장애인은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지원되어야하는 정책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서의 배제는 장애인 통계에서 비장애인의 여행경험과는 현저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10%를 제외한 대부분이 여행경험이 있는 반면, 장애인의 경우 겨우 9.8%만이 여행경험이 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러한 통계는 현재 장애인의 여행에 대한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장애인여행 실태 (2015 장애인통계)〉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9.8	11.9	2.5	9.5	10.5	8.1	6.1	24.9
해외여행 (지난1년동안)	3.9	5.3	1.1	3.5	2.4	3.3	2.8	3.6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2.0	13.1	18.7	2.1	16.1	28.5	12.3	5.4
해외여행 (지난1년동안)	0.7	5.5	12.1	0.0	3.5	0.0	6.7	0.0

이와같이 장애인의 여행 경험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여행을 떠나도 머물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편의증진법상 숙박시설의 의무사항은 아주 최저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객실의 수는 전체 객실 수 중에 2%,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만 보유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최저의 기준 또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중 30개 이하의 시설은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휴가기간인 8월에서 9월까지 표본으로 일부 숙박업소의 장애인객실 비율을 조사했다. 해당 조사에서 2%를 초과하여 장애인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30%의 숙박시설이 2%이하이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2%라는 수치는 100개의 숙소에서 겨우 2개를 설치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아니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객실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 2) 관광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

### ① 관광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기본권리

관광활동에서 장애인이 차별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활동이 어느 한가지 권리의 보장만으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은 다양한 기본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관광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관련한 많은 부분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권

이 보장되어야하며, 관광지에 도착했을 때 편의시설의 설치를 통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유형별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관광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동권을 보장해야하지만, 현재는 열차를 제외하고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는 휠체어장애인이 전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쉽게 떠날 수 없다. 특히 시설물 접근의 경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숙박업소나 관광지를 찾기 어려워서 가고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하는 결국 선택권이 전혀없는 관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 ② 관광활동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사례

관광에 필수요소인 교통편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불가 외에 흔히 관광지에서 대여해서 사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핸드컨트롤 등 장애인보장구가 설치된 차량이 없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역시 렌트가 업체에서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타지역에서 여행을 온 사람은 사전에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일부지역의 경우 예약으로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에 저상버스의 수는 총 9대에 불과하다.

관광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시설물은 접근이 불가하다. 특히 관광지 주변 카페, 식당 등은 장애인편의법 상 편의시설 의무가 주어지는 3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접근과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30개 이하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펜션, 모텔(여관), 게스트하우스 등은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용객실 보유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시설도 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외에도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는 시각장애인에게 맹인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수영장 등에서 휠체어 바퀴 때문에 바닥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 지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관광과 관련한 차별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차별사례에 대하여 권고결정을 내려 시정조치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장애인차별 사례〉

1. 렌트카 대여업체가 핸드컨트롤 등 장애인용보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차량대여 거부
2.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항공기 안전탑승을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구비 운영 권고)
3.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장에 대한 매뉴얼 등 마련)
4. 선박 이용에 있어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5.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전동휠체어 분리 및 재장착 직원교육 권고)
6.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 3) 권리로서의 장애인관광(여행)

장애인의 관광(여행)활동은 몇 가지 법제도적 규정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여가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과 여행서비스와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의 문화적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한다.
- 여행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의 구성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06년 12월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2008년 5월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다양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30조에 특별히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 등 의식주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여행과 관련한 내용들 또한 열거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문화정 명소 및 유물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지 접근 보장, 서비스 접근 보장 등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여행활동 중 접근권의 보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국회를 통해 비준되어 현재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결국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여행에 대한 접근권 규정은 단순히 선언이 아닌 지켜져야 하는 법이며, 이에 대한 차별행위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 ③ 관광진흥법

####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5.28.]

####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국민의 관광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이 법에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따로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책임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관광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를 위한 시책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4) 장애인차별금지법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

####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9.19.]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사회와 그 사회속의 구성원의 생활상과 그에 따른 욕구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관광 등 여가생활에 대한 요구이다. 10여년전 법이 만들어질 당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후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도 관광이나 여행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관광활동에서의 이동권, 접근권 등 다양한 유형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에 대한 내용만을 재화.용역의 내용안에 담고 있던 것을 관광활동까지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작년 9월 이러한 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관광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담아내게 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미비한 법조항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하지 않던 상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제공과 시책 강구 등을 명시하였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재화용역에서의 차별금지는 전반적인 서비스제공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관련한 사항들에도 모두 적용가능한 내용이었다. 다만, 그내용을 좀더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에 의무를 강조해서 담아내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으며, 또한 적용에 단계적 범위를 두어서 전면 적용되는 것은 2030년으로 미루어두고 있어서,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 3. 맺는 이야기-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관광(여행)

####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 필요

##### ① 관광진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관광을 단순히 지원과 시책의 강구로 규정하고 있는 선언적인 내용 이외에 장애

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나 관광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현재 의무규정이 미비한 숙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숙소 비율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지 자체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통해 실질적인 관광활동에서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 ③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기본적인 교통수단을 실제 거주지가 아닌 타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관광활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 2) 장애인만을 위한 관광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 구축

2005년 유엔세계관광기구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고 관광시설 및 목적지에 주차장, 표지판, 엘리베이터,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과 장애인시설 이용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가격의 책정까지 장애인만이 아닌 누구나 가능한 관광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역, 관련시설, 숙박시설, 식당, 박물관 등 관광관련시설들이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제시함으로 누구나 가능한 관광시설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

## 3) 모두가 함께 떠날 수 있는 관광(여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리고 그 차별받는 상황에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새로운 환경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기위해 나서는 걸음이라면 더욱 차별없이 누구나 그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에서의 차별금지란 즐거움을 찾기위한 여정이기에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길 수 있어



야한다. 앞에서 언급된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시설접근권은 꼭 장애인뿐 아니라 이러한 권리를 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모두에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은 자연권이다.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권리가 관광활동 과정에서 침해받지 않도록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행복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광환경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장애인이 가고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갈수 있는 곳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변화하기를 희망해본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모두 함께 떠납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현안토론 3

##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은종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장애인권리옹호체계 역할 정립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은종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 1. 들어가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신안염전’사건 이후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장애인학대 사건은 ‘노예사건’이라는 신조어를 낳았고, 장애는 차별을 넘어 힘으로 뺏겨져 있다. 최근에 일어난 ‘잠실야구장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권리옹호체계가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은 지난 수 십 년간 반인권적인 차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각종법률에 근거해 마련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비롯하여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도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대표적인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이다. 이들 장애인 권리옹호시스템들은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면서 옹호시스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들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2.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옹호의 현황과 문제점

###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2018년 6월 20일 이후, 제59조의11)에 근거해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할 목적으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 ①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②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③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④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⑤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⑥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⑦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정책의 개발,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학대통계의 생산 및 제공 등)이다. 지역은 ①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③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④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⑤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이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역옹호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지원 업무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옹호기관은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피해의 회복과 사회복귀,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관점에서 권익옹호의 실질적 업무는 지역옹호기관이 담당한다 할 수 있다.

#### 현장조사에 있어서

장애인옹호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는 첫 어려움은 현장조사이다. 학대신고를 받은 경우 조사권한을 갖고 있지만, 권한의 명시가 분명하지 않아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건물의 출입에서부터 당사자와의 면담, 그리고 필요시 행해지는 응급조치까지 방해와 거부를 금지하고 과태료와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6월 20일 이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 피해자나 신고자·목적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고,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조사 시 권한을 강화했다.

### 응급조치에 있어서

장애인옹호기관은 아직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자원과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학대피해자의 회복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보호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장애인이 일정기간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쉼터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기존 생활공간에서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은 물론 거주시설 입소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피해장애인은 개인별 특성이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업무협력에 있어서

현장조사나 피해장애인 지원 시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도움은 절대적이지만, 관련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의 근거 부족으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장조사를 할 때 장애인옹호기관만으로는 원활한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피해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여러 안전의 문제 등 사법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사법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 또 피해장애인을 지원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원 확인이나 각종 서류발급 등 행정기관으로 부터 여러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원활한 협조를 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령으로 6월 20일부터는 장애인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현장조사 시 상호 동행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또 장애인옹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신원조회 등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인력 및 예산의 부족

현재 지역 장애인옹호기관은 평균 3~4명의 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인학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상담원들은 신고와 상담을 받고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하고, 피해자 회복지원과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회계 및 기관 운영지원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규모로는 각종 장애인 인권침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넓은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광역도(道) 지역의 장애인옹호기관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해 적절한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결국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 기타

장애인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을 구조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가해자를 고발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한 다수의 민감 정보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처리와 정보보호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BPR/ISP(장애인학대 정보시스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과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과 인권침해 전반을 다룬다. 또한 차별에 관한 시정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②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③구급·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④구급·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⑤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⑥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⑦위원회의 조사 지원 ⑧관할구역 내에 있는 제7조제1항제4호가 정한 대상 이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7조제6항제3호의 각급 학교,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구급시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장애차별 진정사건의 조사·조정·구제 (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⑨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⑩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권위는 본부와 5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애인 권리옹호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또 권리옹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 권리옹호 업무를 하는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정사건에 처리에 있어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밀착형 장애인 권리옹호를 하는데 있어 지역사무소의 한계는 명확하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관이라는 역할로 인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시정권고결정 이상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당사자에게 필요시 되는 회복지원이나 사후관리 등의 재발방지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 제33조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중앙 및 17개 시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 ①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②발달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③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침·편람 마련 및 교육지원 ④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⑤발달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⑥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⑦제9조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⑧발달장애인 권리침해의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의 지원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지역은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②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③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④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⑤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⑥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⑦보호자에 대한 감독 ⑧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⑨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⑩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각종 복지지원과 서비스제공이지만, ‘유기 등’의 인권침해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대상범죄의 권리구제는 유기·학대·약취·유인·인신매매·상해·폭행·살인·성폭력·체포·감금 등 주로 인신범죄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사기·준사기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대상이 안 되고 있다. 최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나 소액대출 사기, 각종 수급비 횡령, 임금체불 등의 사례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대응 한계가 있다. 또 피해자지원에 있어 중요한 사례 종료 후 사후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계도 있다.

## 라.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설치된 장애인인권센터는 2006년 전라남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도별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조례’ 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 그 근거가 있다. 이들 중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등은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②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③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④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⑤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에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장조사나 응급조치 등에 있어 조사권이나 피해자에 대한 분리 등에 있어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지자체의 집행부와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 3.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역할 정립과 협력 방안

### 가. 국가인권위원회

학대는 인권위에서 다루는 차별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중 괴롭힘 등은 인권위의 업무에 있어 장애인옹호기관과 중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옹호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전문성을 갖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비록 인권위가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장애인학대 사건의 협력에 있어서는 장애인옹호기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전문기관들과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인권위는 특성상 모든 인권문제를 다루기에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행정적 접근성, 심리적인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진정한 권리옹호에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만, 인권위는 이 부분에 있어 역할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진정한 인정이 스스로 해결하는 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옹호기관은 분명 강점이 있다.

반면 인권위는 장애인옹호기관이 갖고 있지 못한 다수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이나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조치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장애인옹호기관에 접수되는 상당수의 사례가 복잡하고 심대하다. 특히 다수인시설사건의 경우, 조사와 접근이 쉽지 않고 사례의 내용이 복잡할 뿐 아니라 다양한 양태의 인권침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장애인옹호기관만으로는 역부족을 느낀다.

인권위 또한 시설의 방문조사 시 소속직원만으로는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시설사건의 경우 상호 요청할 수 있는 업무협력 구조를 만들어 상시적인 공동 조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위가 다루는 괴롭힘 등의 진정사건은 처리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지원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다. 이 경우 장애인옹호기관을 적극 활용해 피해자 지원을 연계 할 수 있는 구조적 절차를 마련한다면 진정한 뿐 아니라 인권위, 그리고 장애인옹호기관이 상호 상생하는 옹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발달장애인 유기 등)는 대부분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범죄 중 횡령, 배임, 명의도용 등 경제적 착취 행위나 사기, 준사기 등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장애인학대 중에는 발달장애인 유기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반면 장애인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및 대응 업무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업무를 포괄할 뿐 아니라 전체 장애유형은 물론 미등록인 경우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와 관련한 두 기관의 업무중첩과 유사성을 이유로 일부에서 전달체계의 일원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도 장애인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계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두 기관은 별도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어 전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과 전달체계 개선,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국회 양승조위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제정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중앙 및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와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통해 현재 흩어져 있는 권리옹호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를 일부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발제자가 개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다.

여러 전제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근거해 설치하고자 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는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해 쉽게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해 전문적으로 학대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 발달장애인을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권익옹호체계 일원화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이다. 현재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으나 뚜렷한 실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주체인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나 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서비스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원화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지만, 현시점에서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두 기관 모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장애계 내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조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한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

## 다.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학대의 근간은 장애차별에 있다. 현재 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상 학대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시도의 장애인옹호기관은 차별과 관련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면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남 등에서는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조례’ 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의 시도조례를 개정해 장애인옹호기관에서 장애인 차별과 장애인학대 업무를 하도록 전달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일

부 시도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옹호기관의 위탁업무에 차별 업무를 수행 하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옹호에 있어 당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역장애인옹호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까지 조례에 근거해 별도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대전(1곳)과 경기도(2곳) 두 지자체뿐이다.

장애인옹호기관과 장애인인권센터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적인 지위와 권한, 역할의 차이로 인권센터는 업무수행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 즉 장애인의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애인의 이익에 최우선한 관점에서 보면 지자체 인권센터의 역할을 장애인옹호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시도의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내용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확대업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라. 기타 유관기관

장애인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장애인옹호기관에서만 전담하여 독점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전문기관들의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와 같이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례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찾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유관기관 간에 사전에 충분한 교류와 업무협의를 통해 사례의 연계 및 이관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의 업무 수행 매뉴얼에 담는 것이 당사자의 이익에 최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오며

장애인옹호기관은 장애등록과 관계없이 장애가 의심되고 학대가 의심되면 직접 개입하여 피해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후지원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고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각종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 그 양상도

너무 다양해 대응과 예방,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협력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장애계는 장애인을 둘러싼 인권침해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한국형 P&A를 오랫동안 꿈꿔왔다. 이제 그 첫 시작이 장애인옹호기관의 설치로 시작되었다. 장애인옹호기관이 한국형 P&A기구로서 지역사회에서 촘촘한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하고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상호 협력과 연대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부록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8.3.20.] [법률 제14893호, 2017.9.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차별금지

###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 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 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 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 정 2016.2.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 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 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 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 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 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 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

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 부칙 <제14893호, 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

| 인 쇄 | 2018년 4월

| 발 행 | 2018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 주 소 |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8층

| 전 화 | (051) 710-9720 | F A X | (051) 710-9717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978-89-6114-618-0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